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 및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근거 마련 등 〉
■ 김남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499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	4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확대 등	14
3.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근거 마련 및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남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거나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구제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강간·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과 달리 취급되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상호 대등한 관계 속의 자발적 행위로 보기 어려움에도 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본인의 자발적 동의 하에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종종 오해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은 곧 성착취 범죄 피해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용어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유인하는 등의 행위인 그루밍 또한 성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오프라인상의 그루밍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루밍 외에 오프라인상의 그루밍 또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으로 용어 변경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 변경함(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38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제56조 및 제57조).

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다. 오프라인상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

한 처벌근거를 마련하고,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 2).

라.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등에 통지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범죄로 확대함(안 제47조의2).

IV. 검토의견

1.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를 성착취로 용어 변경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착취하는 행위----- -----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5. ~ 9. (생략)	5. ~ 9. (생략)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 ----- ----- ----- -----

현행	개정안
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생략)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②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u>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u>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u>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 등) ①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②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기 위하여</u>-----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 -----. 1. -----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u>----- --- 2. ----- ----- -----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u>----- 3. -----

현행	개정안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u>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u>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생략) ③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의 <u>상대방</u>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생략)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생략) 4. 영업으로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 -----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u>----- 4.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의 대상</u>----- ② (현행과 같음) ③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의 <u>대상</u>-----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 -----. 1.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 ----- ----- 3. (현행과 같음) 4.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현행	개정안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u>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를 제공한 자 4. (생략) ③ <u>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u>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 ----- -----. 1.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2.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3.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4. (현행과 같음) ③ <u>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u>----- -----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학교, 가족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고¹⁾,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표면적으로는 자발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출 후 숙식을 위해 성매매에 연루되거나 성폭행 경험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성매매에 연루되는 등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성매매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음.²⁾ 이처럼 미성숙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성

1) 조주은,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 1080호, 2015.11.4. 참조.

매매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관점에서
성인과 다른 맥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편,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
아동·청소년”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으나,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
동·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은 아직 존재하고 있음. 성매매라는 용어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인상과 아동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인상
을 주기 때문임.

이에 개정안은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란 용어를 성착취로 변경함으
로써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범죄 가담자나 선도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차원에서 타당
한 측면이 있음.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의 매매·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이행지침(2019)’을 통해 아동성매매 대
신 ‘성매매를 통한 아동성착취(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prost
itution)’로 기술할 것을 권고하는 등³⁾ 아동성매매 용어 사용을 지양하
는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음.

2) 이유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참조.

3) 김홍미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21쪽.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성매매란 용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제1호4)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성착취(성적 착취)의 경우 정의나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개별 법에서 해당 용어만 사용되고 있음.

「청소년성보호법」⁵⁾에서는 제2조제5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의하고 있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제1항에서 성적 착취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그 외, 「형법」 제288조제2항6)의 약취·유인죄나 제289조제2항7)의 인신매매죄에서도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2호8)의 “성폭력범죄” 정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제2조제1호9)의 “인신매매등”의 정의에서도 성적 착취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
- 6)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7)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 9)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신매매등”이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하 “아동·청소년”이라 한다)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 가. ~ 다. (생략)

그런데 「형법」, 「성폭력처벌법」, 「인신매매방지법」에서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구분하여 나열하고 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 조항에서도 같은 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¹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상 성매매와 성착취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를 성착취로 대체할 경우 법적 개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종합하면,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를 성착취로 대체하는 것은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국제 규범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나,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법적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처벌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법」의 성매매 정의 형식을 차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규정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법적 체계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 개념은 유지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포함하는 ‘성착취’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¹¹⁾임.

참고로, 서울특별시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조항¹²⁾을 둔 이후 경기, 부산, 광주, 전남, 제주 등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 조항을 규정¹³⁾하고 있음.

11) 여성가족부는 제4호의2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개념을 신설하는 안을 제안함.

현행	여성가족부안
<신 설>	4의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에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밖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여 금전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12)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 제2조(정의)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13) 각 지역별 조례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의규정은 아래와 같음.

지역	조례 관련규정
경기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포함한다.
부산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부당하게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포함한다.
광주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전남	1.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
제주	2.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하여 정신적,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 그 밖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2까지의 죄를 포함한다.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확대 등

개정안은 현행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면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보호시설·상담시설의 지원 대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제45조, 제46조, 제47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6의2. “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u>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u> 을 말한다. 7. ~ 9. (생략) 제38조(<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u>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u> 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	제2조(정의) ----- -----. 1. ~ 6. (생략) 6의2.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u>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u> ----- ----- -----. 7. ~ 9. (현행과 같음) 제38조(<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에 대한 조치 등) ① ----- ----- <u>제2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u> ----- ----- -----. ②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

현행	개정안
른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7조의2에 따른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제45조(보호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의 <u>청소년 지원시설</u>,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u>청소년상담복지센터</u>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u>청소년쉼터</u> 또는 「<u>청소년 보호법</u>」 제35조의 <u>청소년 보호·재활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보호·자립지원 3. 장기치료가 필요한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 ③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제45조(보호시설)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3.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현행	개정안
및 위탁 제46조(상담시설) 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생략)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3. 그 밖에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② (생략)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u>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의 교육·상담 및 지원	----- 제46조(상담시설) ①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3. -----<u>아동·청소년 성착취</u>-----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의 설치) ① ----- -----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②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1.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 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현행	개정안
3.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3.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 -----
4.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4.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
5.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5.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
6. <u>아동·청소년 성매매</u> 등에 관한 조사·연구	6. <u>아동·청소년 성착취</u> ----- -----
7. 그 밖에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u> 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7.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u>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③ -----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
④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 -----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현행	개정안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9. (생략) 9의2. <u>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10. ~ 25. (생략)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 ----- ----- ----- ----- ----- ----- ----- ----- ----- ----- ----- ----- ----- -----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10. ~ 25.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현행	개정안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략) 5의2. 제56조제1항제9호의2의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및 <u>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6. ~ 17. (생략) ④ ~ ⑥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 ----- <u>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u> 6. ~ 1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피해아동·청소년¹⁴⁾ 중 제13조제1항¹⁵⁾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¹⁶⁾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은 “성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제38조), 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제45조 및 제46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제47조의2) 조항에서 이들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하고 기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5조의2¹⁷⁾의 죄의 피해자까지 포함하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 4.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

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센터의 신고 및 상담업무의 범위도 이에 맞추어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되는 죄에 성착취물 제작·배포죄(제11조)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제15조의2) 등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성매수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오프라인에 한정하는 관점이 반영된 결과¹⁸⁾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다양화 및 가파른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뿐만 아니라 보호시설의 보호 및 병원과의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성매매 유입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봄.

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18) 김홍미리, “아동·청소년 성착취 실태 및 정책과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22~23쪽 참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별 현황 】

['19.1.1. ~ '24.6.30., 건수(중복)]

구분	계	유포	불법촬영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진합성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19	4,114	1,213	1,043	354	557	144	273	530
2020	6,983	1,586	2,239	967	1,050	349	306	486
2021	10,353	2,103	2,228	1,939	2,660	176	533	714
2022	12,727	2,481	2,684	2,284	3,836	212	534	696
2023	14,565	2,717	2,927	2,664	4,566	423	500	768
2024.6.	11,838	2,155	3,306	1,725	3,009	726	193	724

자료: 디성센터(여성가족부, “여가워 주요현안보고-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 2024.9.4. 1쪽 재인용)

또한 여성가족부는 사업운영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법 제47조의2¹⁹⁾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 중인바,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먼저, 개정안은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서 제13조와 관련 “제13조²⁰⁾의 죄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

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자발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도 피해자로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앞에서 살펴보았듯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와 성착취는 현행법에서 구분해서 쓰이므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대체하는 것은 법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상 성매매피해자는 성매매의 상대방과 다른 개념²¹⁾인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현행과 같이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으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법률의 명확성 측면을 고려할 때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범위에 제11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조의2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 현행법 제38조제1항²²⁾에서는 성매매를 한 아동·청소년(성을

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2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사는 행위의 상대방)은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²³⁾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도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3호²⁴⁾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처벌대상에서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아동·청소년을 제외할지 여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와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고,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다른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로 권유·유인하는 행위는 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처벌을 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성매매(성을 사는 행위)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더 넓은 의미의 성착취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을 별도로 정의하며, 성매매 피해아동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2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2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청소년에 대한 조치(제38조)는 기존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을 유지하되, 보호시설(제45조), 상담시설(제46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제47조의2) 조항은 지원대상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넓히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임.

3. 오프라인상 성적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근거 마련 및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개정안은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외의 방법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제2조제4호 각 목²⁵⁾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 ① ----- ----- <u>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u>정보통신망을 통하여</u>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	② ----- <u>정보통신망 또는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u> -----

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현행	개정안
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신설>	----- ----- -----.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먼저, 개정안은 오프라인상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15조의2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성적 착취 목적 불요)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길들여 성적 학대 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루밍 행위²⁶⁾는 온라인뿐만 아

26) 그루밍(Grooming)의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성인인 가해자가 아동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이를 통하여 성적인 가해행위를 하거나, 또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성인 가해자가 나이·경제적·지적인 측면 등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악용하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이수정 외,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48쪽; 전수아 외,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제1호, 2021, 98쪽; 김학경,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 법제와의 비교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4권제2호, 11쪽)

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그루밍 범죄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서 만나서 이루어지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님. 예컨대 온라인으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만남에서 성적 욕망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경우는 현행법 제15조의2에 따라 처벌할 수 없음.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 성적 착취 목적 불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상 처벌의 공백을 메우고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성범죄처벌법 제15A조²⁷⁾에서는 아동과의 성적 대화에 대한 처벌 규정에서 대화 수단에 제한이 없어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손글씨, 구두 등 오프라인 대화도 모두 포함하고 있고²⁸⁾, 독일 형법 제176조제3항 및 제4항²⁹⁾에서도 아동에게 성행위를

27) 영국 2003년 성범죄처벌법(Sexual Offences Act 2003), 원문: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3/67/section/15A>

28) 김학경, “그루밍 성범죄 처벌 규정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국 법제와의 비교 중심으로”, 경찰학연구 제24권제2호, 2024, 18~20쪽 참조.

하도록 영향을 미친 자 등을 처벌하면서 그 수단을 정보통신망으로 한정하지 않고 저작물(서면),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 게시, 음란한 내용의 녹음매체 재생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³⁰⁾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개념상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분비공개수사 등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현행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³¹⁾)에서 제15조의2의 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어난 행위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하게 오프라인 그루밍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를 삭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513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수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각칙의 해당 죄에 개별 규정이 있어야

29) 원문 및 번역본은 국회도서관 세계법제정보 “독일형법” 참조(https://world.moleg.go.kr/web/wli/lgsllInfoReadPage.do?CTS_SEQ=42067&AST_SEQ=69&nationReadYn=Y&ETC=3&searchNtl=DE)

30) 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제4호, 2020, 43~51쪽 참조.

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함³²⁾.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대화의 대상은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수사관(성인)이므로 불능미수³³⁾로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 제15조의2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그루밍을 시도한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³⁴⁾.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오프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루밍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위장수사시 아동·청소년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그루밍을 시도한 자(불능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32)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33) 불능미수는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말함(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불능범과 불능미수” 참조)

*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4) 학계에서는 법 제15조의2에 규정한 행위는 성범죄에 대한 준비행위이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면 예비행위의 미수를 처벌하는 것으로 불필요하다는 주장(안경옥,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예의 시사점”, 경희법학 제55권제3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2020, 57쪽)과 입법자가 별도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구성한 이상 그 자체가 독립된 행위이므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김혁, “위장수사과정에서의 불능미수에 관한 소고”, 범죄수사학연구 통권 제17호,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3, 97쪽)이 모두 존재함.